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99. 6. 30. 이전 또는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제3자”라 함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시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삭제
4. ‘녹색기술’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한정한다.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 (6)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

은 특허출원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 (3)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5)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 (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개발사업
-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 (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은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본다.

(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발명에 대한 출원.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으로 한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의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

는 공공처리시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출원

(1) 65세 이상 고령자

(2)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까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청이 별표 3에서 정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청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별표 1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이하 "대상국가등" 이라 하고 정부간 기구를 포함한다)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하 "최우선일" 이라 한다)과 대한민국 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나.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

출원의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과 대한민국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 (이하 "우선심사신청서" 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특허청 출원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 1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의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을 제3자가 실시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제4조제4호에 따른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의뢰된 출원임을 표시하고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적음으로써 제5조제1항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8호, 2019.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신청이유		증빙서류
제4조제1호에 따른 제3자실시 출원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2호 나목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녹색기술 인증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녹색인증 신청을 위한 기술 설명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전문 기업확인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녹색전문기업의 주 업종이 일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녹색 인증을 위한 기술(사업)설명서, 매출비중 내역서 등]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조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산업 투자회사 투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집적지 및 단지	출원인이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금융지원 인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기술개발 사업 선정 공고 등) 2.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3. 환경마크 인증서, 탄소성적표시 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발행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발행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5. 기타 국가의 지원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2호마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직무발명보상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

신청이유	증빙서류
우수기업의 출원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의 출원	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제4조제2호바목에 따른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라고 확인한 서류 등
제4조제2호사목에 따른 국가의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신제품 인증서, 신기술 인증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등
제4조제2호아목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제4조제2호자목에 따른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실시품 사진,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제4조제2호자목에 따른 출원인이 업으로서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시제품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다.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라.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업으로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2호자목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
제4조제2호자목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 등에서 선정되어 출원이나 사업화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 발명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상장, 인증서, 확인서 등)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 받은 사실의 확인서, 대상 선정 공고 등)

신청이유	증빙서류
지원을 받은 출원	
제4조제2호자목에 따른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출원	<p>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보조받은 기업의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협약서, 확약서, 사업수행확인서, 최종평가결과확인서 등) 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기업의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투자실적증명서, 투자확인서, 투자확약서 등 투자증명서류)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제4조제2호타목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p>특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특화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자라고 해당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인정한 서류</p>
제4조제2호과목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p>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발급하는 공문 등</p>
제4조제2호거목에 따른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자가 한 출원	<p>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p>
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p>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2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상기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의 사본 특허출원된 발명과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 설명서
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특허청장이 대상국가등의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p>다음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상국가등의 특허출원(이하 “대응출원”이라 한다)의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대상국가등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심사관련통지서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대응출원에 대한 대상국가등의 심사관련통지서 사본 및 번역문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응출원의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제4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허청장이	<p>다음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5호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다만, 중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p>

신청이유	증빙서류
<p>대상국가등의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p>	<p>행된 경우에는 제5호에 있어서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만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해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이하 “대응국제출원”이라 한다)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2. 대응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사본 및 번역문 3. 대응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4.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대응국제출원의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5. 대응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위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

[별표 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의 신청요건(제4조제3호 관련)

신청이유	신청요건
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 1. 일본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 2. 일본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특허청장이 대상국가등의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 1. 대상국가등의 특허출원(이하 “대응출원”이라 한다)에는 신청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심사 통지서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있는 경우 2. 대한민국에 출원한 특허출원(이하 “본원출원”이라 한다)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구항을 한정 또는 그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
제4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허청장이 대상국가등의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 1.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이하 “대응국제출원”이라 한다)에는 신청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국제단계의 심사서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을 받은 청구항(이하 이 별표에서 “특허요건 인정 청구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2.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국제출원의 특허요건 인정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특허요건 인정 청구항을 한정 또는 그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

[별표 3]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체계 (제4조제2호너목 관련)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
인공지능	Z01A
사물인터넷	Z01I
삼차원 프린팅	Z05P
자율주행차	Z03V
빅데이터	Z01B
클라우드 컴퓨팅	Z01C
지능형 로봇	Z03R
스마트 시티	Z03C
가상증강현실	Z03A
혁신신약	Z03M
신재생에너지	Z05E
맞춤형 헬스케어	Z03H
드론(무인기)	Z03D
차세대 통신	Z01T
지능형 반도체	Z05S
첨단소재	Z05M

[별지 제1호서식]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전자문서로만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할 서류】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1. 【제출인】 , 【대리인】 및 【출원번호】 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란은 필요한 경우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5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3. 【제출할 서류】 란에는 제출하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벤처기업확인서 1통
4. 【첨부서류】 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 면

[별지 제2호서식]

【서류명】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본원출원번호】

【대응출원번호】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

【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

【명칭】

【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

※ 기재요령

1. 【대응출원번호】란에는 위 대상국가의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발행된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적습니다.
예) 【대응출원】 JP 평18-1234호, 2007. 1. 1.
2.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란에는 위 대상출원과 본원출원간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대응출원에는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의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의 특허출원과 연계되어 있음이 명확한 상대국의 다른 특허출원(예. 분할출원, PCT 국제출원의 조기 국내단계 진입출원)도 포함됩니다.
예)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 대응출원 JP 18-1234은 본원출원(분할출원)의 원출원(KR10-2008-12345)이 조약 우선권주장하고 있는 상대국 특허출원 JP 17-5678의 분할출원으로서 본원출원의 대응(패밀리)특허에 해당합니다.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란에는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발행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가.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란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칭, 조사기관, 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나. 【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 다. 해당 조사보고서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조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 국제조사보고서(ISR), 일본특허청, 2007.08.25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에서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므로 제출생략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란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서 기재한 선행기술문헌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가. 【명칭】란에는 선행기술문헌명(공개일)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예) 【명칭】 JP2000-123456(2000.01.01), US2004/348454(2004.05.04)
【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특허문헌으로 용이하게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명칭】 3GPP TR 29.802 v7.0.0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G)MSC-S-(G)MSC-S Nc Interface based on the SIP-I protocol, JUNE 2007(sections 5.7 and 5.8)

【제출여부】 제출

5.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 란에는 본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 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을 대비하여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 가. 검토 결과에는 양자의 차이점이나 본원 발명의 기술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구체 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선행기술문헌 중의 특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에는 인용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나. 복수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대비설명을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2 이상의 청구항을 함께 묶어 선행기술문헌과 대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다. 선행기술문헌 중의 특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 니다.
- 예) 본원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000000에 관한 것으로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 헌은 00000입니다.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0000000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상기 제1 항은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구성요소로 000000를 부가하고 있어 상기 선행기술문 헌과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본원 발명은 상기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효과를 얻 을 수 있는 신규한 발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원 발명의 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 제1항의 기술적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역시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비해 차이가 있는 신규한 발명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 면

[별지 제3호서식]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A. 본원출원번호	
B. 신청	
대상국가	
신청종류	<input type="checkbox"/> 국내단계 심사관련 통지서를 이용한 PPH 신청 <input type="checkbox"/> 국제단계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를 이용한 PCT-PPH 신청
대응(국제)출원번호	
C. 제출서류	
I. 심사 관련통지서 또는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관련 통지서	
1. <input type="checkbox"/> 서류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수 가능)	
2. <input type="checkbox"/> 번역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어/영어로 된 번역문 확인 가능)	
3. 서류명 및 통지일	
II.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	
4. <input type="checkbox"/> 서류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수 가능)	
5. <input type="checkbox"/> 번역문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어/영어로 된 번역문 확인 가능)	
6. 서류명 및 통지일	
III. 선행기술문헌	
7. <input type="checkbox"/> 서류 제출 <input type="checkbox"/>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수 가능) <input type="checkbox"/> 선행기술문헌 없음	
8. 서류명 및 통지일	

D.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본원출원 청구항 번호	대응(국제)출원에서 특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E.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의 Box VIII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필요시)

※ 기재요령

A. 본원출원번호

- ‘본원출원번호’란에는 본원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최우선일을 적습니다.
예) 제10-2014-0001234호, 2015. 1. 1., 2015. 1. 1.

B. 신청

- ‘대상국가’란에는 고시 제4조제3호가목, 제4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국가등 중 어느 한 대상국가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신청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 ‘대응(국제)출원번호’란에는 위 대상국가등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 (국제)출원일, 최우선일을 적습니다.
예) JP 평18-1234호, 2015. 1. 1., 2015. 1. 1.
PCT/US2014/123456, 2015. 1. 1., 2015. 1. 1.

C. 제출서류

- I. ‘심사 관련통지서 또는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관련 통지서’란의 서류 및 번역문 제출 여부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하고, 해당 서류명 및 통지일을 기재합니다.

예) 특허결정서, 2008. 12. 30.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2011. 1. 1.

(참고)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수/확인 가능한 경우는 심사관이 정보통신망 [예. AIPN(일본), public PAIR(미국), PVS online(덴마크), Patentscope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II.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란의 서류 및 번역문 제출 여부 중 하나를 각각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하고, 해당 서류명 및 통지일을 기재합니다.

예) JP2000-123456(2000.1.1.)
보정서, 2009. 6. 25.자로 일본특허청에 제출
WO/2011/123456(2011.1.1.)
보정서, 2011. 1. 1.자로 국제사무국에 제출

- III. ‘선행기술문헌’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하고, 해당 서류명 및 통지일을 기재합니다.

예) JP2000-123456(2000.1.1.), US2004/348454(2004.5.4.)

D.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란에는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대응되는 “대응(국제)출원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응관계 설명 부분에는 양 청구항의 동일 여부 또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본원출원 청구항 번호	대응(국제)출원에서 특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1	1	양 청구항은 동일
2	2	"
3	3	"
4	1	청구항 4는 대응출원의 청구항 1의 A라는 구성을 한정함
5	6	"
6	4	"
7	1	청구항 7은 대응출원의 청구항 1에 B 라는 구성이 부가됨

* 대응국제출원에서 특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은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을 의미

E.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의 Box VIII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

-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의 Box VIII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 란에는 필요시 안에 표시(예: ☑)하고, 본원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위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상국가등이 중국인 경우(중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경우)에는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만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예)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제8기재란의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에는 ‘청구항 제X항은 청구항 제Y항의 A를 인용하고 있으나, 상기 A는 청구항 제Y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견해서에 기재된 청구항 제X항에 대응되는 본원출원의 청구항 제Z항은 견해서에 기재된 청구항 제Y항에 대응되는 본원출원의 청구항 제W항의 B를 인용하도록 보정되었으므로, 상기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에서 청구항의 지시하는 바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는 해소되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 면

[별지 제5호서식]

【서류명】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선행기술조사】

【검색방법】

【검색DB】

【검색어】

【검색IPC】

【검색결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

청구항	선행기술 문헌명	대비 설명		
		유사점	차이점	대비 판단

【우선심사 신청이유】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출원 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기재요령

1. 【선행기술조사】란에는 신청인이 선행기술을 검색한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합니다. 선행기술문헌 검색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검색 사이트 및 검색 DB[예 : IPLD(<http://www.ipdl.inpit.go.jp>), Naver(<http://www.naver.com/>), Google(<http://www.google.co.kr>), NDSL(<http://www.ndsl.kr/index.do>), RISS(<http://www.riss4u.net/index.jsp>)] 등을 활용합니다.
 - 가. 【검색방법】란에는 신청인이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아래에 【검색DB】, 【검색어】, 【검색IPC】란 등을 만들어 구체적인 검색 방법을 적습니다.
 - 예) 【검색방법】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에서 검색
 - 【검색DB】한국 특허문헌, 미국특허문헌, 일본특허문헌
 - 【검색어】핸드폰, 케이스, 슬라이드
 - 【검색IPC】H04B, H04L
 - 나. 【검색결과】란에는 신청인이 검색한 선행기술 문헌 중 출원 발명의 청구항 전체와 비교하여 찾아낸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4개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예) 1. 공개특허 제00-00000호(19xx.x.x.)
 - 2. 미국특허 제00000000호(19xx.x.x.)
 - 3. 일본특허공고 평00-000000호(19xx.x.x.)
 - 4. 19xx.x.x.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발행, 대한화학회지, 제0권, 제0호(제0면 내지 제0면)
2.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란에는 출원 발명의 청구항과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아래 대비표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대비표에는 전체 청구항 중 하나의 청구항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문헌을 선정하고 선정된 선행기술 문헌과 해당 청구항과의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가. 유사점 칸에는 해당 독립항과 유사한 기술적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선행기술문헌의 해당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당 쪽/행 등)합니다.
 - 나. 차이점 칸에는 해당 독립항과 선행기술 문헌간에 기술적 구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다. 대비 판단 칸에는 유사점, 차이점에 기초하여 해당 독립항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였는지, 선행기술문헌에 비해 얻을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 라. 독립항에 대한 대비표는 반드시 작성하되 종속항에 대한 대비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선행기술 문헌명	대비 설명		
		유사점	차이점	대비 판단
1	문헌1	문헌1(3p 10줄~20줄)의 0000와 청구항1항의 △△△△가 실질적으로 대응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 xxx, xxx는 문헌1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차이점에서 나타난 구성요소 xxx, xxx를 통해 0000라는 본원 발명이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

5	문헌2	문헌2(fig1)의 0000는 청구항1항의 △△△△에 대응됨	문헌2(fig1)의 0000는 청구항1항의 △△△△의 상위 개념	문헌2의 0000를 본원 발명에서는 구성요소 △△△△로 한정하여 XXXX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10	문헌3	0000	0000	0000

3.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는 출원 발명이 우선심사의 신청 대상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 본 발명은 0000에 관한 것으로, 증빙서류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00000에 관한 것이므로 000법시행령 제X조X호 및 고시 제4조제X호X목에 해당합니다.

가. 고시제4조제2호자목(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출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란과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만들어 출원된 발명이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란에는 별표의 증빙서류(제품 또는 시제품의 사진, 카달로그, 모형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시 발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실시주체, 실시기간, 실시장소, 실시 조건 등)를 출원 발명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 본 출원의 출원인은 출원 발명과 대응되는 시제품을 0000 소재 본 출원인의 사업장에서 xx.xx.xx자로 생산하였으며, 증빙서류1(시제품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3(시제품 사진)에 표시된 구성 1 내지 5는 출원 발명의 특허청 구범위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 A 내지 E에 대응됩니다.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란에는 출원 발명과 관련된 업종에서 업으로서 실시(준비) 중인 상황을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기재합니다.

예) 본 출원의 출원인은 증빙서류2(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있는 장치A에 관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증빙서류3(매출실적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시 발명에 대한 상당액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원 발명은 업으로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나.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 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란을 만들어 출원발명과의 업종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 본 인증 기업 A사는 증빙서류1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카메라 및 방송장비 제조업이 주업종인 기업으로 본 출원 발명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고화질 CCTV와는 매우 기술적 관련성이 높으므로 업종 관련성이 있습니다.